

전라북도 장수군 공고 제2016-633호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) 공시송달 공고

식품위생법 제36조(시설기준) 및 같은 법 제37조(영업허가 등)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 명령)하고 이를 송달하였으나, 이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6년 8월 11일

장 수 군 

1. 제 목 :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)
2. 처 분 일 : 2016년 8월 3일
3. 근거법규 : 식품위생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
4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

업 종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위반사항	영업소 폐쇄일자
일 반 음식점	한마당	이희순	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186	영업장 멸실 및 6개월 이상 휴업	2016. 8. 3.

5. 공고기간 : 2016. 8. 11. ~ 8. 25. (14일간)

6. 고지사항

당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(<http://simpan.go.kr>)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서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8. 문 의 처 : 전라북도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(☎ 063-350-2356)